

대구예술대학교 학생증발급규정시행세칙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시행 세칙은 대구예술대학교 학생증 발급 규정에 의거 학생증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발급 및 재발급 절차) ① 학생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신청서(발급 규정 제7조에 의함)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다.

1. 신청서 배부처 : 학생처

2. 신청 기간

가. 신입생 : 입학 후 수강 신청을 필한 1주일 이내

나. 복학 및 재입학생 : 당해학기 등록기간내

다. 재발급 : 수시

② 신청시 구비 사항

가. 학생증{직불기능포함}발급 사진대장(거래 은행 비치) 1부.

나. (은행) 거래 신청서(거래 은행 비치)

다. 사진 (가로3cm X 세로4cm) 1매

라. 주민등록증(운전 면허증) 사본 1부.

마. 도장

3. 신입, 복학, 재입학생들은 등록금 영수증 지참

③ 유의 사항

1.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.

제3조 (기타) 이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시행 세칙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 세칙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1. 도안, 규격 및 재질

가. 도안

학 생 증	
학교마크	학과 :
	학부/전공 :
	성명 :
	주민등록번호 :
	학번 :
사 진	
바 코 드	
대구예술대학교 총장	

계좌 번호
■ 본 카드는 최초 본인이 00은행 창구나 전화로 사용 신청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■ 본 카드는 전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와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■ 본 카드의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■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처 및 00은행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.
학생처 (0545)973-5318

(앞 면)

(뒤 면)

나. 규격 및 재질

- ① 전체크기 : 가로 × 세로(85mm × 54mm)
- ② 사진크기 : 가로 × 세로(20mm × 24mm)
- ③ 재 질 : 플라스틱

다. 글씨체 : 고딕체

